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1. 6. 1.
1차 개정 2022. 4.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본교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학의 의무)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충전시설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의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동기 면허증 혹은 운전 면허증 사본을 대학에 제출 후 운행하여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와 원동기 면허증 혹은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행할 수 없다. (개정 2022.04.20)

② 대학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부서(이하 "대학 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 **학생지원팀** (개정 2022.04.20)
2. 교직원 : **행정지원팀** (개정 2022.04.20)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제9조 (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h 이하로 한다.

제10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이하 "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량이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12조 (충전의 장소 및 방법)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충전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 의무)에 한하여 제조사별 충전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총장은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

다.

⑤ 화재 및 전기 안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대학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제13조 (주차 장소의 제공) ① 총장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② 주차공간을 별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충전소, 주차공간, 자전거 거치장소 등에 주차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 (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다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대학 관리부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학 관리부서는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압수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차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학 관리부서는 보관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 요구 시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 관리부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1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총장은 제1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17조 (운전자격 준수 및 음주운전 금지)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1에 의거하여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만 운행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 (과로 및 약물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7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합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말 것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 착용을 고려 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 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아니 함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 할 것
12.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장은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대학 관리부서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22조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상

자 수,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대학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4. 사고신고사유
5. 사고발생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6장 기 타

제24조 (제재조치 등) 이 규정을 위반 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취소 및 대학 캠퍼스 내 운행을 금지하며, 대학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24, 2021.6.1.)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57, 2022. 04. 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04.20)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수 신 : 학생취업지원처장 / 행정지원처장

	답 당	팀 장	처 장
개인형 이동장치 모델명			
이 름		학 과	
학 번		연락처	
운행 목적		원동기면허 소유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주의사항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구역으로 이동하며 보도주행은 절대 금지한다.
2.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한다.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절대 금지한다.
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한다.
5.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6.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033) 738-7529(학생지원팀) / 033) 730-0160(행정지원팀)으로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것을 서약하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